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9. 27 선고 2022가단2010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조치홍

변 론 종 결 2022. 8. 16.

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1. 4.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 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4. 15. 접수 제8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318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23. ‘C은 원고에게 86,220,788원 및 그중 25,964,050원에 대하여 2010.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9.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D은 2021. 2. 22. 사망하였고, D의 자녀인 C, E, 피고, F(상속분 각 1/5)과 이미 사망한 자녀 G의 배우자 H(상속분 3/35), G와 H의 자녀들인 I, J(상속분 각 2/35)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C, E, 피고, F, H, I, 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4. 15. 접수 제8519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4. 15. 접수 제85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인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C에게 상속지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들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지분인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별지 목록 제1, 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4. 15. 접수 제8519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1. 전남 해남군 K 대 664㎡
2. 전남 해남군 K
[도로명주소] 전남 해남군 L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36.03㎡
부속건물 토담조 스투트지붕 단층 창고 16.53㎡
3. 전남 해남군 M 답 2,625㎡
4. 전남 해남군 N 답 1,300㎡
5. 전남 해남군 O 답 393㎡
6. 전남 해남군 P 전 844㎡
7. 전남 해남군 Q 답 1,395㎡ 중 1/2 지분
8. 전남 해남군 R 답 1,700㎡ 중 1/2 지분 끝.

